

의안 번호	2417	<b>[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5. 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5. 19.(월)

## 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고, 경조사 휴가를 정비하여 근무 여건 정립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범위 확대(안 제3조 및 별표5)
- 경조사 휴가 정비(안 별표4)
- 법령(법률, 시행령) 제정·시행 및 기존법령 폐지 반영(안 제16조 제2항)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, 제7조의7제1항 및 제2항

## 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고, 경조사 휴가를 정비하여 근무 여건 정립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 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5. 2. 11.>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 
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 
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